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국제협력관을 신설하면서 국제협력국을 폐지하고, 농업혁신정책실 및 식량정책실을 신설하면서 차관보 및 농업정책국을 폐지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 그린바이오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동물병원 진료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탄소중립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 청년농업인 육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데이터 기반 축산유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동물보호·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촌정책국장 밑에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6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중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의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재배정하여 활용하고, 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은 증원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축산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식물병해충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인천공항 고위험 병해충 정밀검역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수의법의학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료 품질검사·유통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7급 3명, 8급 4명),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6급 2명, 7급 4명)을 각각 증원하며,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폐지하고, 인수공통감염병 공동 대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중 1명(연구사 1명)은 감축하되, 1명(연구관 1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원 5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원 12명(6급 2명, 7급 5명, 8급 3명, 9급 2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정원 13명(6급 4명, 7급 4명, 8급 4명, 9급 1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 00. 공포·시행)되고,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에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립종자원의 정원 1명(8급 1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의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농업정책과와 경영인력과를 통합하여 농업경영정책과로, 식품산업진흥과와 외식산업진흥과를 통합하여 식품외식산업과로, 종자생명산업과와 총액팀인 농기자재정책팀을 통합하여 첨단기자재종자과로 변경하며, 총액팀인 농촌재생에너지팀을 농촌탄소중립정책과로 변경하고, 지역개발과를 농촌계획과로 변경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 하부조직의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명칭변경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

며,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과 현안 대응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유무역협정팀·반려산업동물의료팀·청년농육성정책팀·그린바이오산업팀·축산유통팀을 신설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2. 5. ~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 중 “정책기획관 및”을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및”으로, “정책기획관은”을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3호까지, 제13호의2, 제13호의3 및 제14호”를 “제1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비상안전기획관”을 “국제협력관”으로, “제17호”를 “제28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비상안전기획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3항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⑥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정보통계정책담당관·국제협력총괄과·농업통상과·검역정책과 및 자유무역협정팀을 두며,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정보통계담당관·국제협력총괄과장·농업통상과장·검역정책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자유무역협정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제11항(중전의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빅데이터전략담당관”을 “국제협력총괄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업분야 국제협력정책의 총괄
2. 국제 농업 관련 단체 및 농업 관련 해외 주재 공무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
3. 농업통상기획에 관한 사항
4.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등과의 농업협력에 관한 사항
5. 개별국가와의 농업협력 및 농업통상현안에 관한 사항
6.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적개발원조사업에 관한 사항
7. 글로벌농림협력추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추진·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국제기구, 지역농업기구, 국제구호단체, 외국정부, 국제민간기구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적개발원조사업 관련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 무상원조시행기관 업무에 관한 사항
11. 한국국제협력단의 농업분야 무상원조 추진 관련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12. 주요국의 농업정책 및 통상정책 정보수집·분석 및 배포
13.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농림분야 운용계획 협의에 관한 사항
14. 해외농업개발 중장기 전략수립에 관한 사항
15.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신고·추진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16. 해외농업투자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17. 해외농업개발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8. 외국인투자위원회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국제협력관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⑫ 농업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세계무역기구의 농업분야 다자협상에 관한 사항
2. 세계무역기구의 농업분야 무역분쟁에 관한 사항
3. 세계무역기구의 농업분야 이행 및 통보에 관한 사항
4. 세계무역기구의 농업분야 가입 및 무역정책검토에 관한 사항
5. 세계무역기구의 통일 원산지에 관한 사항
6. 세계무역기구의 농업 관련 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세계무역기구 외 개도국간 무역특혜공여 및 다자협상에 관한 사항
8.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및 관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 농산물 수입제도 운영 및 농업분야 산업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사항
10. 남·북간 농산물의 반·출입에 관한 사항
11. 경제협력개발기구 관련 업무 및 국내정책과의 조화 유도
12. 농업환경과 관련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와 관련된 농업통상 및 기술협력
14. 아시아유럽정상회의와 관련된 농업통상 및 기술협력

⑬ 검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관리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식물방역법」의 운영
3. 수출입 식물 검역에 관한 사항
4.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사항

5. 동식물 검역 및 위생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농산물 분야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SOFA)에 관한 사항
 7.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과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관한 사항
 8.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에 관한 사항
 9.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 동물질병 지역화 등 수입위험 분석에 관한 사항
 11. 동물 및 축산물 수입위생조건 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운용
 12. 「가축전염병 예방법」(검역분야) 운용
- ⑭ 자유무역협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무역협정 농업분야 기본전략 및 대응계획 수립
2. 지역무역협정 농업분야 상품양허 협상에 관한 사항
3. 지역무역협정 동식물 위생·검역 협상에 관한 사항
4. 지역무역협정 농업분야 원산지 및 지적재산권 협상에 관한 사항
5. 지역무역협정 농업분야 투자 및 서비스 협상에 관한 사항
6. 지역무역협정 농업분야 분쟁해결 및 무역구제 협상에 관한 사항
7. 지역무역협정 농업분야 의견수렴 및 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8. 지역무역협정 농업분야 협정문 작성 및 협의에 관한 사항
9. 지역무역협정 농업분야 합의사항 이행 및 점검에 관한 사항
10. 지역무역협정 국내외 동향 파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8조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농촌정책국) ① 농촌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촌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으로 하며,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22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농촌정책국장을 보좌한다

④ 농촌정책국에 농촌정책과·농촌계획과·농촌사회서비스과·농촌경제과·농촌여성정책팀·동물복지정책과·농촌탄소중립정책과 및 반려산업동물의료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농촌여성정책팀장 및 반려산업동물의료팀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농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농업·농촌 발전 기본계획 및 중장기 투융자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농촌지역 개발, 농촌산업 활성화 등 농촌정책의 총괄
3. 중장기 농촌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농식품산업의 중장기 미래비전과 전략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운영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7. 농촌 정책관련 관계부처 법령 제·개정 및 정책협의 총괄
8. 농촌개발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

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국립농업박물관법」의 운영

10. 농어촌 영향평가 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

11.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농업인 단체의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3.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14. 국가먹거리계획(국가식량계획)에 관한 사항

15. 농어업회의소 지원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농촌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지역의 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농촌 주택개량에 관한 사항

3. 한계농지의 정비계획 수립 및 조정

4. 농촌경관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5. 농촌경관보전 직접지불제에 관한 사항

6. 일반농산어촌개발분야 포괄보조금제도 운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8. 농촌지역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9.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10. 농촌 지역 권역별, 읍·면 종합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11. 통합적 지역개발 정책기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2.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 및 지원체계 수립 추진

13.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분야 부문별 발전계획안,
시행계획, 평가 및 연차보고서 작성

⑦ 농촌사회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 복지증진시책의 수립 및 추진

2. 농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령 등 취약계층 농업인 복지에 관한 사항

4. 농촌 공동체회사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적 농업 육성 등 농촌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지역먹거리계획 및 공공급식에 관한 사항

⑧ 농촌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 산업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영

3. 농촌의 기업유치 및 투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촌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 활력증진을 위한 관련 산업의 육성·평가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6. 농촌지역 특화·향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농촌산업 육성지원기구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8. 농촌자원복합산업분야 포괄보조금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농공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10. 농촌산업 정책의 부처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11. 농촌산업 박람회에 관한 사항

12. 도농교류 협력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14. 농촌체험 및 휴양기반 확충 등 농촌관광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5. 도농교류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6. 도농교류 지원기구 운영 및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17.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의 운영
 18. 도농교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19. 농촌 산업 관련 교육·인력 육성 및 지원체계 수립 추진
- ⑨ 농촌여성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농업인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력의 경영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정책관련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6. 농촌여성·가정 등의 복지에 관한 사항
 7.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8. 여성농업인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여성농업인 노동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여성농업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11. 농업·농촌 분야 양성평등 의식·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2. 농촌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13.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4. 농촌 학생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15. 농촌 전통문화 및 문화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16. 농촌 교육여건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 ⑩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학대 방지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동물복지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5. 동물실험윤리 정책에 관한 사항
 6. 「동물보호법」 및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소관 사무 중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
하는 사항
- ⑪ 농촌탄소중립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식품 분야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2. 농촌지역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업 바이오매스(축산분뇨는 제외한다)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농촌지역 에너지 자립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의 조정·관리
 5. 농식품분야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업무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6. 농식품분야 온실가스 감축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
 7. 농식품 분야 배출권거래제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8. 농식품 분야 배출권거래제 관련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등록·평

가·검증·인증 등 상쇄제도 운영

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관련 협의에 관한 사항

10. 농식품분야 녹색성장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1. 녹색성장위원회 업무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대응에 관한 사항

⑫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 관련 산업 및 영업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양육 인프라 구축, 의료 및 보험 정책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관련 국가자격(행동지도사) 운영 및 민간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반려동물 보호기반 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수의사법」의 운영 및 수의인력 수급 및 수의료 정책에 관한 사항

제9조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농업혁신정책실) ①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농업혁신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농식품혁신정책관·농업정책관 및 식품산업정책관으로 하며, 농식품혁신정책관·농업정책관 및 식품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

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농업혁신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 농업정책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3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농업혁신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⑤ 식품산업정책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33호부터 제4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농업혁신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⑥ 농업혁신정책실에 스마트농업정책과·첨단기자재종자과·과학기술정책과·친환경농업과·빅데이터전략담당관·농업경영정책과·농지과·공익직불정책과·농업금융정책과·재해보험정책과·청년농육성정책팀·푸드테크정책과·식품외식산업과·수출진흥과 및 그린바이오산업팀을 두되, 과학기술정책과장 및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빅데이터전략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청년농육성정책팀 및 그린바이오산업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으로, 다른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⑦ 스마트농업정책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스마트팜 등 농식품 ICT 융복합 사업에 관한 사항

2. 농업생명분야(스마트농업 포함) 정책 기획 및 과제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식품분야 신기술·신사업 업무에 관한 사항

4. 농식품분야 미래이슈 관리에 관한 사항

5. 스마트팜 혁신밸리 및 실증단지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6. 스마트팜 청년창업 지원 및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7. 스마트팜 수출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식품혁신정책관 소관 사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

는 사항

⑧ 첨단기자재중자과장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식품 ICT 기자재·통신 표준화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운영
3. 농업기계의 안전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농업기계화 및 농업기계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농업기계 및 농업용 석유류의 세제지원에 관한 사항
6. 「비료관리법」의 운영
7. 비료의 공급·품질관리 및 제조·수출입에 관한 사항
8. 토양 지력증진에 관한 사항
9. 「농약관리법」의 운영
10. 농약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1. 종자산업 육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
12. 종자산업 관련 대외협력
13. 국립종자원에 대한 지도·감독
14.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보호법」의 운영

⑨ 과학기술정책과장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림식품 과학기술정책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 농림식품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
3. 농림식품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사업평가
4.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농림식품 과학기술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7. 농림식품 관련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의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농촌진흥청업무에 관한 사항

10. 「농림수산물과학기술 육성법」의 운영

11. 농식품분야 다부처 국가연구개발 협력에 관한 사항

12. 도시농업 육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

13.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영

14. 농식품분야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과 대외 대응

⑩ 친환경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추진

2.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의 추진 및 기술개발지원

3. 유기농업육성계획의 수립 및 지원

4. 자연순환농업에 관한 사항

5.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운영

7.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의 운영

8. 친환경농산물의 유통활성화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9.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협정에 관한 사항

10. 유기가공식품인증제도에 관한 사항

1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영

⑪ 빅데이터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관련 데이터의 총괄수집 및 분석지원
2. 농업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거버넌스 체계 마련
3. 농업경영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의 구축
4. 영농단계별 농업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정보 제공
5.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농작업데이터 자동수집체계의 구축
6.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 총괄
7.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8. 농업·농촌 정보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⑫ 농업경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구조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중장기 농가소득·경영안정 정책 및 제도의 개발
3. 통일농업정책 수립 및 북한농업지원업무의 총괄
4. 농업관련 장기 전망지표의 정리 및 예측
5. 자유무역협정 이행 지원기금의 운용
6.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운영
8. 농업분야 서비스산업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9.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10.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11. 농업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사항

12. 농업경영컨설팅에 관한 사항

1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영

14. 도시민의 귀농·귀촌 등 농촌유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5. 농업 관련 정책연구과제 개발에 관한 사항

16. 지역농업 활성화 및 지역농정 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17. 농정 및 식품산업 연차보고서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농업정책관 소관 사무 중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⑬ 농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농지법」의 운영

3. 농지의 소유 및 보전·이용에 관한 사항

4. 농업진흥지역의 관리 및 제도정비에 관한 사항

5. 농지관리기금의 관리·운용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농지은행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영농의 규모화 추진 및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8. 농지연금제도에 관한 사항

9. 농지의 종합정보화에 관한 사항

⑭ 공익직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라 함

다)에 관한 시책 수립 등 운영 총괄

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운영
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6. 공익직접지불제도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경영이양직접지불제에 관한 사항
8. 논활용직접지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⑮ 농업금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분야 금융 및 대출제도 개선·운영에 관한 사항
2. 농업종합자금 등 농업자금의 제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융자업무 총괄 및 위탁관리기관의 업무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 및 농림업자의 대손보전기금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농업자금 및 부채대책자금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
6. 농가부채 경감대책에 관한 사항
7.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 후속조치 등 협동조합 선진화에 관한 사항
8. 농업협동조합의 설립·해산의 인가 등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
9. 농업협동조합의 정관례 제정·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출자자·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

11.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호금융 업무에 관한 사항
13. 농업 관련 조세·부담금·공공요금 업무에 관한 사항
14.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경제사업활성화 점검·평가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6.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업·축산경제부문 경영평가 및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1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에 관한 사항
18. 조합공동사업법인 관련 제도개선,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⑯ 재해보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재해대책 추진 및 농업기상 정보의 수집·전파
2.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경감 대책 추진
3. 농업정책보험 정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
4.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및 사업 운용에 관한 사항
5. 가축 재해보험 제도 및 사업 운용에 관한 사항
6.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제도 및 사업 운용에 관한 사항
7.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8. 「농어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대책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의 운영

9. 농업수입보장보험 제도 및 사업운용에 관한 사항

⑪ 청년농육성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인력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후계농업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3. 농업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한국농수산대학교에 관한 사항

⑫ 푸드테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 및 푸드테크 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사항 총괄
2.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식품산업진흥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식품 및 푸드테크 산업 통계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한국식품연구원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6. 식품산업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7. 식품산업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농식품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에 관한 사항
9. 「식품산업진흥법」의 운영
10.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에 관한 사항
11. 식품의 산업표준규격 및 국제식품규격 운영
12.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식품산업정책관 소관 사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⑬ 식품외식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통·발효식품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2. 김치산업육성 및 세계 김치연구소 업무에 관한 사항
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4. 식품제조·가공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식품업체 규모화, 시설현대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농업인의 식품가공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농업생산자와 식품업체간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8. 식품 외식종합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9.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김치산업 진흥법」의 운영
10. 식품명인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11. 식품소재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2. 설탕산업의 관리·육성에 관한 사항
13. 식품산업 컨설팅에 관한 사항
14.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5. 외식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6. 식재료 가공산업의 육성 및 식재료 유통개선에 관한 사항
17. 한식 세계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8. 한식업체 해외진출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19. 한식 및 식문화의 국내외 보급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20. 해외 우수 한식당 추천제 운영 및 해외 한식당 협의체 등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21. 한식 우수성 해외홍보에 관한 사항

22. 「외식산업 진흥법」 및 「한식진흥법」의 운용

㉞ 수출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시책 수립·시행
2. 농산물 및 식품의 해외홍보, 무역정보의 수집 및 해외시장개척
3. 농산물 및 식품산업 관련 수출물류제도의 운영
4. 농산물 및 식품산업 관련 수출경영체 육성 및 관련단체의 지원
5. 식재료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6. 농식품 수출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7. 농식품 해외 전진기지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8. 수출 농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농식품 수출 통계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0. 농식품 수출 국제협력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11. 농식품 수출신용·보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㉟ 그린바이오산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농식품 생명산업 육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
3.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정책의 수립 및 시행
4. 농식품 생명산업 관련 대외협력
5. 곤충산업 육성정책 수립 및 시행
6.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의 운영

제10조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방역정책국) ① 방역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농업연구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방역정책국에 방역정책과·구제역방역과 및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를 두되, 방역정책과장 및 구제역방역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방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질병에 대한 방역제도의 운영 및 방역대책의 수립·시행
2. 동물질병의 방역기술 표준화 및 방역지침 개발
3.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4.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운용
5. 가축전염병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6. 지휘소연습(CPX) 주관
7.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의 운영
8. 공중방역수의사 제도의 운영 및 공중방역수의사 관리에 관한 사항
9. 위기대응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10. 가축방역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구제역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중가축의 전염병(인수공통전염병을 포함한다) 방역대책 수립·추진

2. 구제역 등 대·중가축의 백신 대책 수립 및 운영

3.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운영

4. 농장[대(大)·중(中)가축]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⑤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小)가축의 전염병(인수공통전염병을 포함한다) 방역대책의 수립·추진

2. 동물약품제도의 운용 및 동물약품 산업육성 등에 관한 사항

3. 인수공통전염병 대책위원회의 운영

4.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운영

5. 농장[소(小)가축]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6. 가축 매몰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백신 수급계획 수립 및 관리

8. 조류인플루엔자 등 소가축 백신대책 수립 및 운영

제11조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식량정책실) ① 식량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식량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식량정책관·축산정책관 및 유통소비정책관으로 하며, 식량정책관 및 유통소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축산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식량정책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

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식량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 축산정책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3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식량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⑤ 유통소비정책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21호부터 제3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식량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⑥ 식량정책실에 식량정책과·식량산업과·농업기반과·농업시설안전과·축산정책과·축산경영과·축산환경자원과·축산유통팀·유통정책과·식생활소비진흥과·원예산업과·원예경영과·농축산위생품질팀을 두되, 축산경영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축산유통팀 및 농축산위생품질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다른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⑦ 식량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량정책 총괄 및 양곡수급기본계획의 수립·조정

2. 쌀 공공비축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수립·조정

4.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식량 관련 국제자료 조사·연구 및 해외곡물 수급동향 분석

6. 식량 관련 국제협력·통상협력 및 남북교류 협력

7. 쌀 수출입에 관한 사항

8. 「양곡관리법」의 운영

9.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운용
10. 쌀 목표가격의 설정 고시 및 목표가격 변경의 국회동의에 관한 사항
11. 양곡유통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12. 양곡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13. 정부관리양곡의 매입·보관 및 판매
14. 양곡가격 등 유통정보조사 및 유통지도·단속
15. 그 밖에 식량정책관 소관사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식량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쌀산업육성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맥류·두류·서류 및 잡곡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항
3. 농작물의 병충해 예방 및 방제에 관한 사항
4. 쌀 전업농의 선발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미곡종합처리장의 운영 지원 및 경영평가·개선에 관한 사항
6.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에 관한 사항
7. 양곡(쌀을 제외한다)의 수출입 관련 업무의 총괄
8. 쌀 자조금 사업에 관한 사항
9. 쌀 소비촉진 업무에 관한 사항

⑨ 농업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용수 이용합리화 계획의 수립·추진
2.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지표수보강개발 사업계획의 수립·추진
3.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에 관한 계획 수립·추진

4. 지하수자원 관리사업 계획의 수립·조정
 5.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계획의 수립·추진
 6.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정비된 토지(사업 준공된 간척토지를 제외한다)의 관리·처분
 7. 농업기반시설의 안전진단 및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8.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9. 농업용수 수질오염 방지대책의 수립·시행
 10. 「방조제 관리법」의 운용
 11. 방조제 개보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2. 발기반정비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13. 대규모 경지정리 및 경작로 확포장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14.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및 운용
 15. 농업생산기반정비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조정
 16.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운영
 17. 4대강 살리기 관련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소수력 발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⑩ 농업시설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간척종합개발사업의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새만금방조제 명소화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과 토지의 이용·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새만금사업 추진에 따른 용지매수 및 보상에 관한 사항

5. 새만금지역 녹색성장 시범단지 조성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 간척지 활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첨단농업·생명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사업 준공된 간척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9. 개간·간척 등 농지 개발계획의 수립·추진

10.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계획의 수립·추진

11. 배수개선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⑪ 축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발전기본계획의 수립

2. 축산자금의 지원·관리 및 축산업등록제에 관한 사항

3. 한국마사회의 지도·감독 및 마필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

4. 「축산법」,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한국마사회법」, 「말산업 육성법」, 「도축장 구조조정법」 및 「축산자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운영

5. 그 밖에 축산정책관 소관 사무 중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⑫ 축산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종별 산업발전대책의 수립·추진

2. 축종별 생산기술 보급 및 지원

3. 축산자조금 운용에 관한 사항

4. 주요 축종의 수급에 관한 사항

5. 송아지 생산안정 및 양돈·양계 계열화 사업

6. 깨끗한 목장 만들기 사업·낙농체험사업

7. 우유 등 유제품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8. 대북축산협력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9. 「낙농진흥법」의 운영

10. 가축개량종합계획의 수립·지원

11. 축산물 브랜드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2. 축산물 가공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⑬ 축산환경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친환경축산 육성대책의 수립·추진

2. 환경친화 축산농장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3. 축산관련 환경오염의 방지 및 축산분뇨의 처리·이용(바이오에너지를 포함한다) 대책의 수립·추진

4. 가축 사육환경의 개선 및 축산분뇨 등의 자원화 지원

5. 축산 기자재에 관한 사항

6. 초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사료작물의 생산·지원 및 이용에 관한 사항

8. 볏짚 등 국내 부존자원의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사료산업의 육성과 사료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

10. 「초지법」 및 「사료관리법」의 운영

⑭ 축산유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축·가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3. 축산물 등급제도의 운영 및 지원

4. 축산물 이력시스템의 운영·관리

5.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용

⑮ 유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물유통구조개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산지유통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운용

4. 농산물유통중사자와 생산자에 대한 유통교육 총괄

5.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농산물 및 식품 가격안정 대책 종합·조정

7. 농산물도매시장과 공판장의 시설·운영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

8. 원예농산물 자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농산물 생산·유통정보화 업무에 관한 사항

10. 농산물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 지원에 관한 사항

11. 산지유통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의 운영

13. 원예농산물 비축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유통소비정책관 소관 사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⑯ 식생활소비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물 및 식품산업 관련 소비자보호정책의 총괄

2. 농식품분야 소비자 협력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농식품종합정보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운영

5. 「식생활교육지원법」의 운영

6.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른 식생활 및 식문화 보급·전파에 관한 사항

7.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식품의 영양성분 분석에 관한 사항

9. 농산물우수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

10.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1. 농산물 직거래 및 소매유통에 관한 사항

10. 소비지·산지 협력에 관한 사항

1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운영

12. 농산물 전자거래에 관한 사항

1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운영

14. 농산물의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

15.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에 관한 사항

16. 지리적 표시제에 관한 사항

17. 제14호에 따른 인증제도, 제15호에 따른 원산지 표시제 및 제16호에 따른 지리적 표시제의 홍보에 관한 사항

18.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

⑰ 원예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채소류(과채류를 제외한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특용작물의 생산

및 수급안정에 관한 사항

2. 채소류·특용작물의 수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채소류·특용작물의 계약재배·수매·저장 및 유통업무에 관한 사항
4. 채소류·특용작물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채소류·특용작물의 브랜드 육성에 관한 사항
6.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의 운영
7. 채소류·특용작물의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8. 특작용 기자재 보급·지원
9. 인삼산업 육성 및 생산·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10.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의 추진에
관한 사항
11. 「인삼산업법」의 운영
12. 농산물의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에 관한 사항
13. 농업관측 통계정보에 관한 사항

⑩ 원예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채류·과수류·화훼류의 생산 및 수급안정에 관한 사항
2. 과채류·과수류·화훼류의 수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과채류·과수류·화훼류의 계약재배·수매·저장 및 유통업무에 관한
사항
4. 과채류·과수류·화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과채류·과수류·화훼류의 브랜드 육성에 관한 사항
6. 과채류·과수류·화훼류의 자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채류·과수류·화훼류의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8. 시설원예산업 육성 및 현대화에 관한 사항

9. 시설원예 에너지 대책에 관한 사항

⑪ 농축산위생품질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물의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및 지도
2. 농산물 안전성 조사에 관한 사항
3. 농장, 도축장, 집유장 관련 축산물 위생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4. 농장, 도축장, 집유장 관련 축산물 위생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농장, 도축장, 집유장의 위생 관리 총괄
6. 농장, 도축장, 집유장의 검사에 관한 사항 총괄
7. 농장, 도축장, 집유장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중 “인천공항지역본부장·영남지역본부장”을 “인천공항지역
본부장”으로, “중부지역본부장”을 “영남지역본부장 및 중부지역본부장”으
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5명(5급 5명)”을 “6명(5급 5명, 6급 1명)”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외식산업진흥과장, 종자생명산업과장”을 “식품외식산업과
장, 첨단기자재종자과장”으로 한다.

제38조제3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2명(보건연구
관 1명, 보건연구사)”를 “1명(보건연구관 1명)”으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621”을 “63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17”을 “632”로 하며, 고

위공무원단 “12”를 “13”으로 하고,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3”을 “12”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4”를 “18”로 하고,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시설사무관·통계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10”을 “117”로 하며, 행정주사·농업주사·수의주사·시설주사·통계주사·전산주사·공업주사·방재안전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환경주사·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05”를 “111”로 하고, 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수의주사보·시설주사보·통계주사보·전산주사보·공업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38”을 “37”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22”를 “21”로 한다.

별표 6의2를 삭제한다.

별표 7 중 총계 “624”를 “639”로 하고, 일반직 계 “620”을 “635”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12”를 “13”으로 하고,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3”을 “12”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5”를 “19”로 하고,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시설사무관·통계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15”를 “122”로 하며, 행정주사·농업주사·수의주사·시설주사·통계주사·전산주사·공업주사·방재안전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환경주사·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03”을 “109”로 하고, 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수의주사보·시설주사보·통계주사보·전산주사보·공업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36”을 “35”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20”을 “19”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157”을 각각 “1,153”으로 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 “6”을 “5”로 하며,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을 “4”로 하고, 농업주사 “97”을 “98”로 하며, 농업주사보 “127”을 “125”로 하고, 농업주사보 또는 농업연구사 “32”를 “33”으로 하며, 수의주사보 “135”를 “132”로 한다.

별표 8 중 행정서기 “35”를 “33”으로 하고, 농업서기 “78”을 “77”로 하며, 방호서기보 “8”을 “7”로 하고, 수의연구관 “30”을 “32”로 하며, 수의연구사 “88”을 “90”으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8”을 “7”로 한다.

별표 9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157”을 각각 “1,153”으로 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 “6”을 “5”로 하며,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을 “4”로 하고, 농업주사 “98”을 “99”로 하며, 농업주사보 “120”을 “118”로 하고, 농업주사보 또는 농업연구사 “32”를 “33”으로 하며, 수의주사보 “128”을 “125”로 한다.

별표 9 중 행정서기 “36”을 “34”로 하고, 농업서기 “73”을 “72”로 하며, 방호서기보 “8”을 “7”로 하고, 수의연구관 “32”를 “34”로 하며, 수의연구사 “82”를 “84”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8”을 “7”로 한다.

별표 10 중 행정주사 “30”을 “29”로 하고, 행정주사·농업주사 또는 통계주사 “108”을 “110”으로 하며, 농업주사 “188”을 “185”로 하고, 행정주사보 “46”을 “45”로 하며, 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162”를 “169”로 하고, 농업주사보 “157”을 “154”로 하며, 행정서기 “54”를 “52”로 하고, 행정서

기 또는 농업서기 “177”을 “181”로 하며, 농업서기 “197”을 “195”로 하고, 농업서기보 “40”을 “39”로 한다.

별표 11 중 행정주사 “30”을 “29”로 하고, 행정주사·농업주사 또는 통계주사 “120”을 “122”로 하며, 농업주사 “188”을 “185”로 하고, 행정주사보 “46”을 “45”로 하며, 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142”를 “149”로 하고, 농업주사보 “165”를 “162”로 하며, 행정서기 “54”를 “52”로 하고, 행정서기·농업서기 “174”를 “178”로 하며, 농업서기 “196”을 “194”로 하고, 농업서기보 “33”을 “32”로 한다.

별표 1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21”을 각각 “220”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220”을 “219”로 한다.

별표 16 제1호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물복지환경정책관	0명	2025년 9월 30일까지
-----------	----	----------------

별표 18 중 2. 제38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 “2022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총계 및 일반직 계 “2”를 각각 “1”로 하며, “보건연구사 1”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별표1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으로 시행으로 신설되는 자유무역협정팀·반려산업동물의료팀·청년농육성정책팀·그린바이오산업팀·축산유통팀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한 농기자재정책팀 및 농촌재생에너지팀을 폐지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00000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농림축산식품부 정원 5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관리운영9급 1명)과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소속기관 정원 26명(6급 6명, 7급 9명, 8급 8명, 9급 2명, 관리운영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차관보)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삭 제>
제5조(기획조정실장) ① (생략)	제5조(기획조정실장)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 ----- ----- ---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및 ----- ----- 정책기획관 및 ----- ----- 국제협력관은 ----- ----- ----- ----- ----- ----- -----.
③ 정책기획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2, 제13호의3 및 제14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③ ----- ----- ----- 제14호까지 ----- ----- ----- -----.

④ 비상안전기획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3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⑤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정보통계정책담당관 및 빅데이터전략담당관을 두며,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정보통계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빅데이터전략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신 설>

④ 국제협력관-----
----- 제28호-----
-----.

⑤ 비상안전기획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3항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⑥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정보통계정책담당관·국제협력총괄과·농업통상과·검역정책과 및 자유무역협정팀을 두며,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정보통계담당관·국제협력총괄과장·농업통상과장·검역정책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자유무역협정팀장은 서

⑥ ~ ⑨ (생략) ⑩ 빅데이터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농업관련 데이터의 총괄수집 및 분석지원 2. 농업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거버넌스 체계 마련 3. 농업경영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의 구축 4. 영농단계별 농업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정보 제공 5.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농작업데이터 자동수집체계의 구축 6.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 총괄 7.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8. 농업·농촌 정보이용 활성화	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 ⑩ (현행 제6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⑪ 국제협력총괄과장----- -----. 1. 농업분야 국제협력정책의 총괄 2. 국제 농업 관련 단체 및 농업 관련 해외 주재 공무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 3. 농업통상기획에 관한 사항 4.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등과 의 농업협력에 관한 사항 5. 개별국가와의 농업협력 및 농업통상현안에 관한 사항 6.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적개발원조사업에 관한 사항 7. 글로벌농림협력추진협의회에 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추진·		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평가 등----- 9. 국제기구, 지역농업기구, 국제구호단체, 외국정부, 국제민간기구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적개발원조사업 관련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 무상원조시행기관 업무에 관한 사항 11. 한국국제협력단의 농업분야 무상원조 추진 관련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12. 주요국의 농업정책 및 통상정책 정보수집·분석 및 배포 13.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농림분야 운용계획 협의에 관한 사항 14. 해외농업개발 중장기 전략수립에 관한 사항 15.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신고·추진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16. 해외농업투자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17. 해외농업개발심의회에 의 운영에 관한 사항 18. 외국인투자위원회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국제협력관내 다른
--	--	--	---	---

<신 설>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⑫ 농업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세계무역기구의 농업분야 다자협상에 관한 사항

2. 세계무역기구의 농업분야 무역분쟁에 관한 사항

3. 세계무역기구의 농업분야 이행 및 통보에 관한 사항

4. 세계무역기구의 농업분야 가입 및 무역정책검토에 관한 사항

5. 세계무역기구의 통일 원산지에 관한 사항

6. 세계무역기구의 농업 관련 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세계무역기구 외 개도국간 무역특혜공여 및 다자협상에 관한 사항

8.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및 관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 농산물 수입제도 운영 및 농업분야 산업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사항

10. 남·북간 농산물의 반·출

<신 설>

입에 관한 사항

11. 경제협력개발기구 관련 업무 및 국내정책과의 조화 유도

12. 농업환경과 관련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와 관련된 농업통상 및 기술협력

14. 아시아유럽정상회의와 관련된 농업통상 및 기술협력

⑬ 검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관리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식물방역법」의 운영

3. 수출입 식물 검역에 관한 사항

4.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사항

5. 동식물 검역 및 위생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농산물 분야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SOFA)에 관한 사항

7.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신 설>

- 협정」과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에 관한 협정」에 관한 사항
8.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농림 축산식품에 관한 사항
9.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 동물질병 지역화 등 수입위협 분석에 관한 사항
11. 동물 및 축산물 수입위생조건 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운용
12. 「가축전염병 예방법」(검역분야) 운용

⑭ 자유무역협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무역협정 농업분야 기본 전략 및 대응계획 수립
2. 지역무역협정 농업분야 상품 양허 협상에 관한 사항
3. 지역무역협정 동식물 위생·검역 협상에 관한 사항
4. 지역무역협정 농업분야 원산지 및 지적재산권 협상에 관한 사항
5. 지역무역협정 농업분야 투자

- 및 서비스 협상에 관한 사항
6. 지역무역협정 농업분야 분쟁 해결 및 무역구제 협상에 관한 사항
7. 지역무역협정 농업분야 의견 수렴 및 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8. 지역무역협정 농업분야 협정문 작성 및 협의에 관한 사항
9. 지역무역협정 농업분야 합의 사항 이행 및 점검에 관한 사항
10. 지역무역협정 국내외 동향 파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8조(농촌정책국) ① 농촌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농촌정책국에 농촌정책과·지역개발과·농촌사회복지과·농촌산업과·농촌여성정책팀 및 농촌재생에너지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농촌여성정책팀장 및 농촌재생에너지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

제8조(농촌정책국) ① 농촌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촌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으로 하며,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농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농업·농촌 발전 기본계획 및 중장기 투융자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농촌지역 개발, 농촌산업 활성화 등 농촌정책의 총괄

3. 중장기 농촌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3의2. 농식품산업의 중장기 미래비전과 전략에 관한 사항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운영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6. 농촌 정책관련 관계부처 법령 제·개정 및 정책협의 총괄

7. 농촌개발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③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22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농촌정책국장을 보좌한다

농지관리기금법」 및 「국립농업박물관법」의 운영

9. 삭제

10. 농어촌 영향평가 제도에 관한 사항

11.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삭제

13. 삭제

14. 농업인 단체의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5.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16. 국가먹거리계획(국가식량계획)에 관한 사항

17. 삭제

18. 삭제

19. 농어업회의소 지원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지역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지역의 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삭제

④ 농촌정책국에 농촌정책과·농촌계획과·농촌사회서비스과·농촌경제과·농촌여성정책팀·동물복지정책과·농촌탄소중립정책과 및 반려산업동물의료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3. 농촌 주택개량에 관한 사항
4. 한계농지의 정비계획 수립 및 조정
5. 농촌경관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6. 농촌경관보전 직접지불제에 관한 사항
7. 일반농산어촌개발분야 포괄 보조금제도 운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삭제
9.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10. 농촌지역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11.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개발 · 보급에 관한 사항
12. 농촌 지역 권역별, 읍·면 종합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13. 통합적 지역개발 정책기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4.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 및 지원체계 수립 추진
15.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분야 부문별 발전계획안, 시행계획, 평가 및 연차보고서 작성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농촌여성정책팀장 및 반려산업동물의료팀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⑤ 농촌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 복지증진시책의 수립 및 추진
2. 농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고령 등 취약계층 농업인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10. 삭제
11. 농촌 공동체회사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사회적 농업 육성 등 농촌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17. 지역먹거리계획 및 공공급식에 관한 사항

- ⑤ 농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농업·농촌 발전 기본계획 및 중장기 투융자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농촌지역 개발, 농촌산업 활성화 등 농촌정책의 총괄
3. 중장기 농촌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농식품산업의 중장기 미래비전과 전략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운영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7. 농촌 정책관련 관계부처 법령 제·개정 및 정책협의 총괄
8. 농촌개발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국립농업박물관법」의 운영

	10. <u>농어촌 영향평가 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u> 11. <u>농어촌서비스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u> 12. <u>농업인 단체의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u> 13. <u>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u> 14. <u>국가먹거리계획(국가식량계획)에 관한 사항</u> 15. <u>농어업회의소 지원에 관한 사항</u> 16. <u>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u>		<u>에 관한 사항</u> 6. <u>농촌지역 특화·향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u> 7. <u>농촌산업 육성지원기구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u> 8. <u>농촌자원복합산업분야 포괄보조금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9. <u>농공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u> 10. <u>농촌산업 정책의 부처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u> 11. <u>농촌산업 박람회에 관한 사항</u> 12. <u>삭제</u> 13. <u>삭제</u> 14. <u>도농교류 협력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15. <u>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u> 16. <u>농촌체험 및 휴양기반 확충 등 농촌관광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u> 17. <u>도농교류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u> 18. <u>도농교류 지원기구 운영 및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u> 19. <u>「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의 운영</u>	6. <u>일반농산어촌개발분야 포괄보조금제도 운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7. <u>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u> 8. <u>농촌지역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u> 9. <u>농촌주택 표준설계도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u> 10. <u>농촌 지역 권역별, 읍·면 종합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u> 11. <u>통합적 지역개발 정책기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u> 12. <u>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 및 지원체계 수립 추진</u> 13. <u>「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분야 부문별 발전계획안, 시행계획, 평가 및 연차보고서 작성</u>
⑥ <u>농촌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농촌 산업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u> 2. <u>「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영</u> 3. <u>농촌의 기업유치 및 투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u> 4. <u>농촌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u> 5. <u>농촌 활력증진을 위한 관련 산업의 육성·평가 및 컨설팅</u>	⑥ <u>농촌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농촌지역의 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u> 2. <u>농촌 주택개량에 관한 사항</u> 3. <u>한계농지의 정비계획 수립 및 조정</u> 4. <u>농촌경관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u> 5. <u>농촌경관보전 직접지불제에 관한 사항</u>			

20. 도농교류 교육 및 전문인력
의 양성에 관한 사항

21. 농촌 산업 관련 교육·인력
육성 및 지원체계 수립 추진

⑦ 농촌여성정책팀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여성농업인 정책 수립 및 추
진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에 관
한 사항

4. 여성농업인력의 경영능력 향
상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정책관련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6. 농촌여성·가정 등의 복지에
관한 사항

7.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와 보
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에 관한 사항

8. 여성농업인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여성농업인 노동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여성농업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⑦ 농촌사회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 복지증진시책의 수립
및 추진

2. 농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령 등 취약계층 농업인 복
지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촌 공동체회사 등의 육성
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적 농업 육성 등 농촌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지역먹거리계획 및 공공급식에
관한 사항

11. 농업·농촌 분야 양성평등
의식·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
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2. 농촌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
한 사항

13.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
에 관한 사항

14. 농촌 학생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15. 농촌 전통문화 및 문화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16. 농촌 교육여건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⑧ 농촌재생에너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식품 분야 신·재생 에너
지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 농촌지역 태양광 발전사업
의 총괄·조정

3. 농촌지역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업 바이오매스(축산분뇨는
제외한다)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농촌지역 에너지 자립 및 이
용에 관한 사항의 조정·관리

6. 농식품분야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업무의 기획·조정

⑧ 농촌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 산업정책에 관한 계획
의 수립 및 조정

2.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영

3. 농촌의 기업유치 및 투자 활
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촌기업 활성화 지원에 관
한 사항

5. 농촌 활력증진을 위한 관련
산업의 육성·평가 및 컨설팅
에 관한 사항

6. 농촌지역 특화·향토산업 육

한 사항

6. 농식품분야 온실가스 감축업
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
7. 농식품 분야 배출권거래제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8. 농식품 분야 배출권거래제
관련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
량의 등록·평가·검증·인증
등 상쇄제도 운영
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5조의2에 따른 배출권
거래제 관련 협의에 관한 사
항
10. 농식품분야 녹색성장 중장
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에 관한 사항
11. 녹색성장위원회 업무 및 국
제기구와의 협력 및 대응에
관한 사항

성에 관한 사항

7. 농촌산업 육성지원기구의 지
정·관리에 관한 사항
8. 농촌자원복합산업분야 포괄
보조금 제도의 운영 및 지원
에 관한 사항
9. 농공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10. 농촌산업 정책의 부처간 연
계협력에 관한 사항
11. 농촌산업 박람회에 관한 사
항
12. 도농교류 협력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14. 농촌체험 및 휴양기반 확충
등 농촌관광 산업 육성에 관
한 사항
15. 도농교류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6. 도농교류 지원기구 운영 및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17.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의 운영
18. 도농교류 교육 및 전문인력
의 양성에 관한 사항
19. 농촌 산업 관련 교육·인력
육성 및 지원체계 수립 추진

⑨ 농촌여성정책팀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여성농업인 정책 수립 및 추
진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에 관
한 사항
4. 여성농업인력의 경영능력 향
상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정책관련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6. 농촌여성·가정 등의 복지에
관한 사항
7.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와 보
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에 관한 사항
8. 여성농업인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여성농업인 노동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여성농업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11. 농업·농촌 분야 양성평등
의식·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
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2. 농촌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

한 사항

13.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
에 관한 사항

14. 농촌 학생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15. 농촌 전통문화 및 문화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16. 농촌 교육여건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⑩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학대 방지 및 유실·유
기동물 보호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동물복지축산의 확대와 동물
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
항

5. 동물실험윤리 정책에 관한
사항

6. 「동물보호법」 및 「한국진
도개 보호·육성법」의 운영
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소관 사무 중 다른 과의 사무
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⑪ 농촌탄소중립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식품 분야 신·재생 에너
지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의 총괄·조정

2. 농촌지역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업 바이오매스(축산분뇨는
제외한다)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농촌지역 에너지 자립 및 이
용에 관한 사항의 조정·관리

5. 농식품분야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업무의 기획·조정에 관
한 사항

6. 농식품분야 온실가스 감축업
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

7. 농식품 분야 배출권거래제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8. 농식품 분야 배출권거래제
관련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
량의 등록·평가·검증·인증
등 상쇄제도 운영

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5조의2에 따른 배출권
거래제 관련 협의에 관한 사
항

	10. <u>농식품분야 녹색성장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u> <u>에 관한 사항</u> 11. <u>녹색성장위원회 업무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대응에 관한 사항</u> ⑫ <u>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2. <u>반려동물 관련 산업 및 영업 관리에 관한 사항</u> 3. <u>반려동물 양육 인프라 구축, 의료 및 보험 정책에 관한 사항</u> 4. <u>반려동물 관련 국가자격(행동지도사) 운영 및 민간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u> 5. <u>반려동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u> 6. <u>반려동물 보호기반 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7. <u>「수의사법」의 운영 및 수의인력 수급 및 수의료 정책에 관한 사항</u>
제9조(농업정책국) ① <u>농업정책국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u>	제9조(농업혁신정책실) ① <u>농업혁신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u>

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u>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u>」 제12조제1항에 따라 농업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식량정책관으로 하며, 식량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u>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u>」 제12조제1항에 따라 농업혁신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농식품혁신정책관·농업정책관 및 식품산업정책관으로 하며, 농식품혁신정책관·농업정책관 및 식품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u>식량정책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제17호, 제21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30호부터 제3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농업정책국장을 보좌한다.</u>	③ <u>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농업혁신정책실장을 보좌한다.</u>
④ <u>농업정책국에 농업정책과·농지과·경영인력과·농업금융정책과·재해보험정책과·식량정책과·식량산업과·공익직불정책과·농업기반과 및 간척지농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u>	④ <u>농업정책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3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농업혁신정책실장을 보좌한다.</u>

⑤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농업정책 수립 및 조정 2. 농업구조정책의 수립 및 조정 3. 중장기 농가소득·경영안정 정책 및 제도의 개발 4. 통일농업정책 수립 및 북한 농업지원업무의 총괄 5. 농업 관련 정책연구과제 개발에 관한 사항 6. 지역농업 활성화 및 지역농정 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7. 농정 및 식품산업 연차보고서에 관한 사항 8. 농업관련 장기 전망지표의 정리 및 예측 9. 자유무역협정 이행 지원기금의 운용 10.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운영 12. 농업분야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13.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에	⑤ 식품산업정책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33호부터 제4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농업혁신정책실장을 보좌한다.		관한 사항 14. 삭제 1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농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농지법」의 운영 3. 농지의 소유 및 보전·이용에 관한 사항 4. 농업진흥지역의 관리 및 제도정비에 관한 사항 5. 농지관리기금의 관리·운용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농지은행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영농의 규모화 추진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농지연금제도에 관한 사항 9. 농지의 종합정보화에 관한 사항 10. 삭제 ⑦ 경영인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인력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⑥ 농업혁신정책실에 스마트농업정책과·첨단기자재종자과·과학기술정책과·친환경농업과·빅데이터전략담당관·농업경영정책과·농지과·공익직불정책과·농업금융정책과·재해보험정책과·청년농육성정책팀·푸드테크정책과·식품외식산업과·수출진흥과 및 그린바이오산업팀을 두되, 과학기술정책과장 및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빅데이터전략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청년농육성정책팀 및 그린바이오산업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으로, 다른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⑦ 스마트농업정책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스마트팜 등 농식품 ICT 융복합 사업에 관한 사항
--	--	--	--	--

2. <u>후계농업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u> 3. <u>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경영 개선에 관한 사항</u> 4. <u>농업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사항</u> 5. <u>농업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u> 6. <u>농업경영컨설팅에 관한 사항</u> 7. <u>한국농수산물대학교에 관한 사항</u> 8. 「<u>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및 「<u>한국농수산물대학교 설치법</u>」의 운영 9. <u>도시민의 귀농·귀촌 등 농촌유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u> ⑧ <u>농업금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농업분야 금융 및 대출제도 개선·운영에 관한 사항</u> 2. <u>농업종합자금 등 농업자금의 제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3. <u>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융자 업무 총괄 및 위탁관리기관의 업무지도·감독에 관한 사항</u> 4. <u>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 및 농림업자의 대손보전</u>	2. <u>농업생명분야(스마트농업 포함) 정책 기획 및 과제 관리에 관한 사항</u> 3. <u>농식품분야 신기술·신사업 업무에 관한 사항</u> 4. <u>농식품분야 미래이슈 관리에 관한 사항</u> 5. <u>스마트팜 혁신밸리 및 실증 단지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u> 6. <u>스마트팜 청년창업 지원 및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u> 7. <u>스마트팜 수출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u> 8. 그 밖에 <u>농식품혁신정책관 소관 사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u> ⑧ <u>첨단기자재중자과장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농식품 ICT 기자재·통신 표준화에 관한 사항</u> 2. 「<u>농업기계화 촉진법</u>」의 운영 3. <u>농업기계의 안전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u> 4. <u>농업기계화 및 농업기계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u> 5. <u>농업기계 및 농업용 석유류</u>	<u>기금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u> 5. <u>농업자금 및 부채대책자금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u> 6. <u>농가부채 경감대책에 관한 사항</u> 7. <u>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 구조 개편 후속조치 등 협동조합 선진화에 관한 사항</u> 8. <u>농업협동조합의 설립·해산의 인가 등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u> 9. <u>농업협동조합의 정관례 제정·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10. <u>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출자자·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u> 11. <u>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u> 12. <u>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호금융 업무에 관한 사항</u> 13. <u>농업 관련 조세·부담금·공공요금 업무에 관한 사항</u> 14. 「<u>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u>」, 「<u>농업협동조합법</u>」, 「<u>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u>」 및 「<u>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u>」의 개	<u>의 세제지원에 관한 사항</u> 6. 「<u>비료관리법</u>」의 운영 7. <u>비료의 수급·품질관리 및 제조·수출입에 관한 사항</u> 8. <u>토양 지력증진에 관한 사항</u> 9. 「<u>농약관리법</u>」의 운영 10. <u>농약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u> 11. <u>종자산업 육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u> 12. <u>종자산업 관련 대외협력</u> 13. <u>국립종자원에 대한 지도·감독</u> 14. 「<u>종자산업법</u>」, 「<u>식물신품종보호법</u>」의 운영
---	--	--	---

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경제사업활성화 점검·평가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6.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업·축산 경제부문 경영평가 및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1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에 관한 사항
18. 조합공동사업법인 관련 제도개선,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⑨ 재해보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재해대책 추진 및 농업기상 정보의 수집·전파
2.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경감 대책 추진
3. 농업정책보험 정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
4.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및 사업 운용에 관한 사항
5. 가축 재해보험 제도 및 사업 운용에 관한 사항

⑨ 과학기술정책과장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림식품 과학기술정책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 농림식품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
3. 농림식품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사업평가
4.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에 관한 사항

6.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제도 및 사업 운용에 관한 사항

7. 농어업재해보험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8. 「농어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대책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의 운영
9. 농업수입보장보험 제도 및 사업운용에 관한 사항

⑩ 식량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량정책 총괄 및 양곡수급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2. 쌀 공공비축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수립·조정

6. 국내외 농림식품 과학기술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7. 농림식품 관련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농림수산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농촌진흥청업무에 관한 사항
10. 「농림수산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의 운영
11. 농식품분야 다부처 국가연구개발 협력에 관한 사항
12. 도시농업 육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
13.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영
14. 농식품분야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과 대외 대응

⑩ 친환경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추진
2.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의 추진 및 기술개발지원
3. 유기농업육성계획의 수립 및 지원

4.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삭제 6. 식량 관련 국제자료 조사·연구 및 해외곡물 수급동향 분석 7. 식량 관련 국제협력·통상협력 및 남북교류 협력 8. 쌀 수출입에 관한 사항 9. 「양곡관리법」의 운영 10.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운용 11. 삭제 12. 쌀 목표가격의 설정 고시 및 목표가격 변경의 국회동의에 관한 사항 13. 양곡유통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14. 양곡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15. 정부관리양곡의 매입·보관 및 판매 16. 양곡가격 등 유통정보조사 및 유통지도·단속 17. 그 밖에 식량정책관 소관사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⑪ 식량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4. 자연순환농업에 관한 사항 5.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운영 7.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의 운영 8. 친환경농산물의 유통활성화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9.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협정에 관한 사항 10. 유기가공식품인증제도에 관한 사항 1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영 ⑪ 빅데이터전략담당관은 다음	분장한다. 1. 쌀산업육성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맥류·두류·서류 및 잡곡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항 3. 농작물의 병충해 예방 및 방제에 관한 사항 4. 삭제 5. 쌀 전업농의 선발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미곡종합처리장의 운영 지원 및 경영평가·개선에 관한 사항 7.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에 관한 사항 8. 양곡(쌀을 제외한다)의 수출입 관련 업무의 총괄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쌀 자조금 사업에 관한 사항 13. 쌀 소비촉진 업무에 관한 사항 ⑫ 공익직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라 한다)에 관한 시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관련 데이터의 총괄수집 및 분석지원 2. 농업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거버넌스 체계 마련 3. 농업경영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의 구축 4. 영농단계별 농업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정보 제공 5.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농작업데이터 자동수집체계의 구축 6.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 총괄 7.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8. 농업·농촌 정보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⑫ 농업경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구조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중장기 농가소득·경영안정
--	--	--	---

책 수립 등 운영 총괄

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
률」의 운영
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
회 구성 및 운영
4.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6. 공익직접지불제도 전산시스
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
항
7. 삭제
8. 경영이양직접지불제에 관한
사항
9. 논활용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에 관한 사항

정책 및 제도의 개발

3. 통일농업정책 수립 및 북한
농업지원업무의 총괄
4. 농업관련 장기 전망지표의
정리 및 예측
5. 자유무역협정 이행 지원기금
의 운용
6.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
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운영
8. 농업분야 서비스산업 발전전
략 수립에 관한 사항
9.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10.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경영
개선에 관한 사항
11. 농업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사항
12. 농업경영컨설팅에 관한 사
항
1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의 운영
14. 도시민의 귀농·귀촌 등 농
촌유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5. 농업 관련 정책연구과제 개
발에 관한 사항

16. 지역농업 활성화 및 지역농
정 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17. 농정 및 식품산업 연차보고
서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농업정책관 소관 사
무 중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⑬ 농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

1. 농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
립
2. 「농지법」의 운영
3. 농지의 소유 및 보전·이용
에 관한 사항
4. 농업진흥지역의 관리 및 제
도정비에 관한 사항
5. 농지관리기금의 관리·운용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농지은행제도의 운영 및 개
선에 관한 사항
7. 영농의 규모화 추진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농지연금제도에 관한 사항
9. 농지의 종합정보화에 관한
사항

⑬ 농업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용수 이용합리화 계획의
수립·추진
2.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계획의 수립·
추진
3.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에
관한 계획 수립·추진
4. 지하수자원 관리사업 계획의
수립·조정
5.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계획
의 수립·추진
6. 삭제
7. 삭제
8.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정비
된 토지(사업 준공된 간척토
지를 제외한다)의 관리·처분
9. 농업기반시설의 안전진단 및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10.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1. 농업용수 수질오염 방지대책의 수립·시행 12. 삭제 13. 「방조제 관리법」의 운용 14. 방조제 개보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5. 발기반정비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16. 대규모 경지정리 및 경작로 확포장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17.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및 운용 18. 농업생산기반정비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조정 19.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운용 20. 4대강 살리기 관련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1. 소수력 발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⑭ 간척지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 삭제	⑭ 공익직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접	3. 간척종합개발사업의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삭제 5. 새만금방조제 명소화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과 토지의 이용·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새만금사업 추진에 따른 용지매수 및 보상에 관한 사항 8. 새만금지역 녹색성장 시범단지 조성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9. 간척지 활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첨단농업·생명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사업 준공된 간척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 개간·간척 등 농지 개발계획의 수립·추진 13.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계획의 수립·추진 14. 배수개선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지불제도”라 한다)에 관한 시책 수립 등 운영 총괄 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운영 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6. 공익직접지불제도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경영이양직접지불제에 관한 사항 8. 논활용직접지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⑮ 농업금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분야 금융 및 대출제도
---	---	---	---

- 개선·운영에 관한 사항
2. 농업종합자금 등 농업자금의 제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용자 업무 총괄 및 위탁관리기관의 업무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 및 농림업자의 대손보전 기금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농업자금 및 부채대책자금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
6. 농가부채 경감대책에 관한 사항
7.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 구조 개편 후속조치 등 협동 조합 선진화에 관한 사항
8. 농업협동조합의 설립·해산의 인가 등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
9. 농업협동조합의 정관례 제정·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출자자·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
11.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호 금융 업무에 관한 사항

13. 농업 관련 조세·부담금·공공요금 업무에 관한 사항
14.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경제사업활성화 점검·평가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6.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업·축산 경제부문 경영평가 및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1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에 관한 사항
18. 조합공동사업법인 관련 제도개선,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⑯ 재해보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재해대책 추진 및 농업 기상 정보의 수집·전파
2.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경감 대책 추진

3. 농업정책보험 정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

4.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및 사업 운용에 관한 사항

5. 가축 재해보험 제도 및 사업 운용에 관한 사항

6.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제도 및 사업 운용에 관한 사항

7.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8. 「농어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대책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의 운영

9. 농업수입보장보험 제도 및 사업운용에 관한 사항

⑰ 청년농육성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인력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후계농업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3. 농업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한국농수산대학교에 관한 사항

⑱ 푸드테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 및 푸드테크 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사항 총괄

2.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식품산업진흥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식품 및 푸드테크 산업 통계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한국식품연구원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6. 식품산업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7. 식품산업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농식품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에 관한 사항

9. 「식품산업진흥법」의 운영

10.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에 관한 사항

11. 식품의 산업표준규격 및 국제식품규격 운영

12.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식품산업정책관 소관 사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⑲ 식품외식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통·발효식품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2. 김치산업육성 및 세계 김치 연구소 업무에 관한 사항
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4. 식품제조·가공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식품업체 규모화, 시설현대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농업인의 식품가공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농업생산자와 식품업체간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8. 식품 외식종합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9.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김치산업진흥법」의 운영
10. 식품명인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11. 식품소재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2. 설탕산업의 관리·육성에 관한 사항
 13. 식품산업 컨설팅에 관한 사항
 14.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5. 외식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6. 식재료 가공산업의 육성 및 식재료 유통개선에 관한 사항
 17. 한식 세계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8. 한식업체 해외진출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19. 한식 및 식문화의 국내외 보급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20. 해외 우수 한식당 추천제 운영 및 해외 한식당 협의체 등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21. 한식 우수성 해외홍보에 관한 사항
 22. 「외식산업 진흥법」 및 「한식진흥법」의 운용
- ⑳ 수출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
시책 수립·시행
2. 농산물 및 식품의 해외홍보,
무역정보의 수집 및 해외시장
개척
3. 농산물 및 식품산업 관련 수
출물류제도의 운영
4. 농산물 및 식품산업 관련 수
출경영체 육성 및 관련단체의
지원
5. 식재료 수출진흥에 관한 사
항
6. 농식품 수출기반 구축에 관
한 사항
7. 농식품 해외 전진기지 구축
· 운영에 관한 사항
8. 수출 농산물 안전관리에 관
한 사항
9. 농식품 수출 통계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0. 농식품 수출 국제협력 및 컨
설팅에 관한 사항
11. 농식품 수출신용·보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㉔ 그린바이오산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
의 수립 및 시행

2. 농식품 생명산업 육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
 3.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4. 농식품 생명산업 관련 대외
협력
 5. 곤충산업 육성정책 수립 및
시행
 6.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기능성 양
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영
- 제10조(국제협력국) ① 국제협력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국제협력국에 국제협력총괄
과·농업통상과 및 검역정책과
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
한다.
- 제10조(방역정책국) ① 방역정책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농업연구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
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
다.
- ② 방역정책국에 방역정책과·
구제역방역과 및 조류인플루엔
자방역과를 두되, 방역정책과장
및 구제역방역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은 부
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

③ 국제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분야 국제협력정책의 총괄
2. 삭제
3. 국제 농업 관련 단체 및 농업 관련 해외 주재 공무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
4. 삭제
5. 농업통상기획에 관한 사항
6.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등과의 농업협력에 관한 사항
7. 삭제
8. 삭제
9. 개별국가와의 농업협력 및 농업통상현안에 관한 사항
- 9의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적개발원조사업에 관한 사항
- 9의3. 글로벌농림협력추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추진·평가 등에 관한 사항
11. 국제기구, 지역농업기구, 국제구호단체, 외국정부, 국제민간기구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적개발원조사업 관련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로 보한다.

③ 방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질병에 대한 방역제도의 운영 및 방역대책의 수립·시행
2. 동물질병의 방역기술 표준화 및 방역지침 개발
3.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4.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운용
5. 가축전염병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6. 지휘소연습(CPX) 주관
7.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의 운영
8. 공중방역수의사 제도의 운영 및 공중방역수의사 관리에 관한 사항
9. 위기대응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10. 가축방역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2.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 무상원조시행기관 업무에 관한 사항

13. 한국국제협력단의 농업분야 무상원조 추진 관련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14. 주요국의 농업정책 및 통상정책 정보수집·분석 및 배포
15.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농림분야 운용계획 협의에 관한 사항
16. 해외농업개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17.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신고·추진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18. 해외농업투자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19. 해외농업개발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0. 외국인투자위원회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삭제

④ 구제역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중가축의 전염병(인수공통전염병을 포함한다) 방역대책 수립·추진

⑤ 농업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계무역기구의 농업분야 다자협상에 관한 사항
2. 세계무역기구의 농업분야 무역분쟁에 관한 사항
3. 세계무역기구의 농업분야 이행 및 통보에 관한 사항
4. 세계무역기구의 농업분야 가입 및 무역정책검토에 관한 사항
5. 세계무역기구의 통일 원산지에 관한 사항
6. 세계무역기구의 농업 관련 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세계무역기구 외 개도국간 무역특혜공여 및 다자협상에 관한 사항
8.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및 관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 농산물 수입제도 운영 및 농

2. 구제역 등 대·중가축의 백신 대책 수립 및 운영
3.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운영
4. 농장[대(大)·중(中)가축]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⑤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小)가축의 전염병(인수공통전염병을 포함한다) 방역대책의 수립·추진
2. 동물약품제도의 운용 및 동물약품 산업육성 등에 관한 사항
3. 인수공통전염병 대책위원회의 운영
4.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운영
5. 농장[소(小)가축]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6. 가축 매몰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백신 수급계획 수립 및 관리
8. 조류인플루엔자 등 소가축 백신대책 수립 및 운영

업분야 산업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사항

10. 남·북간 농산물의 반·출입에 관한 사항
11. 지역무역협정 농업분야 기본전략 및 대응계획 수립
12. 지역무역협정 농업분야 상품양허 협상에 관한 사항
13. 지역무역협정 동식물 위생·검역 협상에 관한 사항
14. 지역무역협정 농업분야 원산지 및 지적재산권 협상에 관한 사항
15. 지역무역협정 농업분야 투자 및 서비스 협상에 관한 사항
16. 지역무역협정 농업분야 분쟁해결 및 무역구제 협상에 관한 사항
17. 지역무역협정 농업분야 의견수렴 및 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18. 지역무역협정 농업분야 협정문 작성 및 협의에 관한 사항
19. 지역무역협정 농업분야 합의사항 이행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0. 지역무역협정 국내외 동향 파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1. 경제협력개발기구 관련 업무 및 국내정책과의 조화 유도
22. 농업환경과 관련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와 관련된 농업통상 및 기술협력
24. 아시아유럽정상회의와 관련된 농업통상 및 기술협력
- ⑥ 검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관리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식물방역법」의 운영
 3. 수출입 식물 검역에 관한 사항
 4.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사항
 5. 동식물 검역 및 위생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농산물 분야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SOFA)에 관한 사항
 7.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 협정」과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관한 사항
8.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에 관한 사항
 9.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 동물질병 지역화 등 수입위험 분석에 관한 사항
 11. 동물 및 축산물 수입위생조건 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운용
 12. 「가축전염병 예방법」(검역분야) 운용

제11조(축산정책국) ① 축산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축산정책국에 축산정책과·축산경영과 및 축산환경자원과를 두되, 축산정책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축산경영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축

제11조(식량정책실) ① 식량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식량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식량정책관·축산정책관 및 유통소비정책관으로 하며, 식량정책관 및 유통소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산환경자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축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발전기본계획의 수립
2. 축산자금의 지원·관리 및
축산업등록제에 관한 사항
3. 한국마사회의 지도·감독 및
마필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
항
4. 삭제
5. 삭제
6. 도축·가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7. 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8. 축산물 등급제도의 운영 및
지원
9. 「축산법」, 「전통 소싸움경
기에 관한 법률」, 「한국마사
회법」, 「말산업 육성법」,
「도축장 구조조정법」 및
「축산자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운영
1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사
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일반직공무원으로, 축산정책관
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
직공무원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식량정책관은 「농림축산식
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
4조제3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의 사항에 관하여 식량정책실장
을 보좌한다.

④ 축산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종별 산업발전대책의 수립
· 추진
2. 축종별 생산기술 보급 및 지
원
3. 축산자조금 운용에 관한 사
항
4. 주요 축종의 수급에 관한 사
항
5. 송아지 생산안정 및 양돈·
양계 계열화 사업
6. 깨끗한 목장 만들기 사업·
낙농체험사업
7. 우유 등 유제품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8. 대북축산협력 지원사업에 관
한 사항
9. 축산물 이력시스템의 운영·
관리
10.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에 관한 법률」의 운용
11. 「낙농진흥법」의 운영
12. 가축개량종합계획의 수립·
지원
13. 축산물 브랜드 육성·지원
에 관한 사항
14. 축산물 가공산업 육성지원

④ 축산정책관은 「농림축산식
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
4조제3항제13호부터 제20호까
지의 사항에 관하여 식량정책실
장을 보좌한다.

에 관한 사항

⑤ 축산환경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친환경축산 육성대책의 수립
· 추진

2. 환경친화 축산농장의 지정·
관리에 관한 사항

3. 축산관련 환경오염의 방지
및 축산분뇨의 처리·이용(바
이오에너지를 포함한다) 대책
의 수립·추진

4. 가축 사육환경의 개선 및 축
산분뇨 등의 자원화 지원

5. 축산 기자재에 관한 사항

6. 초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사료작물의 생산·지원 및
이용에 관한 사항

8. 벼짚 등 국내 부존자원의 이
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사료산업의 육성과 사료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

10. 「초지법」 및 「사료관리
법」의 운영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⑥ 삭제

⑤ 유통소비정책관은 「농림축
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21호부터 제38호
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식량정책
실장을 보좌한다.

⑥ 식량정책실에 식량정책과·

⑦ 삭제

식량산업과·농업기반과·농업
시설안전과·축산정책과·축산
경영과·축산환경자원과·축산
유통팀·유통정책과·식생활소
비진흥과·원예산업과·원예경
영과·농축산위생품질팀을 두
되, 축산경영과장은 부이사관·
서기관·기술서기관·수의연구
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축산
환경자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
술서기관으로, 축산유통팀 및
농축산위생품질팀장은 서기관
·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
업사무관·수의사무관·공업사
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다
른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
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⑦ 식량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량정책 총괄 및 양곡수급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2. 쌀 공공비축 기본계획에 관
한 사항

3.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수
립·조정

4.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⑧ 삭제

5. 식량 관련 국제자료 조사 · 연구 및 해외곡물 수급동향 분석
 6. 식량 관련 국제협력 · 통상협력 및 남북교류 협력
 7. 쌀 수출입에 관한 사항
 8. 「양곡관리법」의 운영
 9.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운용
 10. 쌀 목표가격의 설정 고시 및 목표가격 변경의 국회동의에 관한 사항
 11. 양곡유통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12. 양곡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13. 정부관리양곡의 매입 · 보관 및 판매
 14. 양곡가격 등 유통정보조사 및 유통지도 · 단속
 15. 그 밖에 식량정책관 소관사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⑧ 식량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쌀산업육성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맥류 · 두류 · 서류 및 잡곡의

-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항
3. 농작물의 병충해 예방 및 방제에 관한 사항
 4. 쌀 전업농의 선발 및 교육 · 훈련에 관한 사항
 5. 미국종합처리장의 운영 지원 및 경영평가 · 개선에 관한 사항
 6.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에 관한 사항
 7. 양곡(쌀을 제외한다)의 수출입 관련 업무의 총괄
 8. 쌀 자조금 사업에 관한 사항
 9. 쌀 소비촉진 업무에 관한 사항
- ⑨ 농업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용수 이용합리화 계획의 수립 · 추진
 2.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계획의 수립 · 추진
 3.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에 관한 계획 수립 · 추진
 4. 지하수자원 관리사업 계획의 수립 · 조정
 5.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계획의 수립 · 추진

6.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정비된 토지(사업 준공된 간척토지를 제외한다)의 관리·처분
7. 농업기반시설의 안전진단 및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8.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9. 농업용수 수질오염 방지대책의 수립·시행
10. 「방조제 관리법」의 운용
11. 방조제 개보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2. 말기반정비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13. 대규모 경지정리 및 경작로 확포장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14.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및 운용
15. 농업생산기반정비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조정
16.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운용
17. 4대강 살리기 관련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소수력 발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⑩ 농업시설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간척종합개발사업의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새만금방조제 명소화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과 토지의 이용·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새만금사업 추진에 따른 용지매수 및 보상에 관한 사항
5. 새만금지역 녹색성장 시범단지 조성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 간척지 활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첨단농업·생명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사업 준공된 간척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9. 개간·간척 등 농지 개발계획의 수립·추진
10.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계획의 수립·추진
11. 배수개선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 ⑪ 축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발전기본계획의 수립
 2. 축산자금의 지원·관리 및
축산업등록제에 관한 사항
 3. 한국마사회의 지도·감독 및
마필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
항
 4. 「축산법」, 「전통 소싸움경
기에 관한 법률」, 「한국마사
회법」, 「말산업 육성법」,
「도축장 구조조정법」 및
「축산자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운영
 5. 그 밖에 축산정책관 소관 사
무 중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
지 아니하는 사항
- ⑫ 축산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종별 산업발전대책의 수립
· 추진
 2. 축종별 생산기술 보급 및 지
원
 3. 축산자조금 운용에 관한 사
항
 4. 주요 축종의 수급에 관한 사
항
 5. 송아지 생산안정 및 양돈·
양계 계열화 사업
 6. 깨끗한 목장 만들기 사업·

- 낙농체험사업
7. 우유 등 유제품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8. 대북축산협력 지원사업에 관
한 사항
 9. 「낙농진흥법」의 운영
 10. 가축개량종합계획의 수립·
지원
 11. 축산물 브랜드 육성·지원
에 관한 사항
 12. 축산물 가공산업 육성지원
에 관한 사항
- ⑬ 축산환경자원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친환경축산 육성대책의 수립
· 추진
 2. 환경친화 축산농장의 지정·
관리에 관한 사항
 3. 축산관련 환경오염의 방지
및 축산분뇨의 처리·이용(바
이오에너지를 포함한다) 대책
의 수립·추진
 4. 가축 사육환경의 개선 및 축
산분뇨 등의 자원화 지원
 5. 축산 기자재에 관한 사항
 6. 초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사료작물의 생산·지원 및

이용에 관한 사항

8. 벼짚 등 국내 부존자원의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사료산업의 육성과 사료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

10. 「초지법」 및 「사료관리법」의 운영

⑭ 축산유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축·가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3. 축산물 등급제도의 운영 및 지원

4. 축산물 이력시스템의 운영·관리

5.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용

⑮ 유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물유통구조개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산지유통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운용

4. 농산물유통중사자와 생산자에 대한 유통교육 총괄

5.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농산물 및 식품 가격안정 대책 종합·조정

7. 농산물도매시장과 공판장의 시설·운영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

8. 원예농산물 자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농산물 생산·유통정보화 업무에 관한 사항

10. 농산물 표준규격화 및 물류 표준화 지원에 관한 사항

11. 산지유통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의 운영

13. 원예농산물 비축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유통소비정책관 소관 사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⑯ 식생활소비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물 및 식품산업 관련 소비자보호정책의 총괄

2. 농식품분야 소비자 협력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농식품종합정보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운영

5. 「식생활교육지원법」의 운영

6.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른 식생활 및 식문화 보급·전파에 관한 사항

7.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식품의 영양성분 분석에 관한 사항

9. 농산물우수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

- 10.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11. 농산물 직거래 및 소매유통에 관한 사항
- 10. 소비자·산지 협력에 관한 사항
- 1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운영
- 12. 농산물 전자거래에 관한 사항
- 1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운영
- 14. 농산물의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
- 15.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에 관한 사항
- 16. 지리적 표시제에 관한 사항
- 17. 제14호에 따른 인증제도, 제15호에 따른 원산지 표시제 및 제16호에 따른 지리적 표시제의 홍보에 관한 사항

18.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

⑰ 원예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채소류(과채류를 제외한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특용작물의 생산 및 수급안정에 관한 사항

2. 채소류·특용작물의 수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채소류·특용작물의 계약재배·수매·저장 및 유통업무에 관한 사항

4. 채소류·특용작물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채소류·특용작물의 브랜드 육성에 관한 사항

6.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의 운영

7. 채소류·특용작물의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8. 특작용 기자재 보급·지원

9. 인삼산업 육성 및 생산·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10.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의 추진에 관한 사항

11. 「인삼산업법」의 운영

12. 농산물의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에 관한 사항

13. 농업관측 통계정보에 관한 사항

⑱ 원예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채류·과수류·화훼류의 생산 및 수급안정에 관한 사항
2. 과채류·과수류·화훼류의 수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과채류·과수류·화훼류의 계약재배·수매·저장 및 유통업무에 관한 사항
4. 과채류·과수류·화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과채류·과수류·화훼류의 브랜드 육성에 관한 사항
6. 과채류·과수류·화훼류의 자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채류·과수류·화훼류의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8. 시설원예산업 육성 및 현대화에 관한 사항
9. 시설원예 에너지 대책에 관한 사항

⑲ 농축산위생품질팀장은 다음

제12조(식품산업정책실) ①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1항에 따라 식품산업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식품산업정책관·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물의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및 지도
2. 농산물 안전성 조사에 관한 사항
3. 농장, 도축장, 집유장 관련 축산물 위생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4. 농장, 도축장, 집유장 관련 축산물 위생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농장, 도축장, 집유장의 위생관리 총괄
6. 농장, 도축장, 집유장의 검사에 관한 사항 총괄
7. 농장, 도축장, 집유장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유통소비정책관 및 농업생명정책관으로 하며, 식품산업정책관·유통소비정책관 및 농업생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식품산업정책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식품산업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 유통소비정책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14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식품산업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⑤ 농업생명정책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33호, 제36호, 제38호부터 제43호까지 및 제46호부터 제4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식품산업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⑥ 식품산업정책실에 식품산업정책과·식품산업진흥과·외식산업진흥과·수출진흥과·유통

정책과·식생활소비진흥과·원예산업과·원예경영과·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농산업정책과·과학기술정책과·친환경농업과·종자생명산업과·동물복지정책과 및 농기자재정책팀을 두되, 과학기술정책과장 및 종자생명산업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농기자재정책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다른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⑦ 식품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사항 총괄
2.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식품산업진흥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한국식품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
6. 식품산업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7. 식품산업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삭제
9. 농식품의 판매촉진 및 소비 홍보에 관한 사항
10. 「식품산업진흥법」의 운영
11.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에 관한 사항
12. 식품의 산업표준규격 및 국제식품규격 운영
13. 삭제
14.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식품산업정책관 소관사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⑧ 식품산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통·발효식품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2. 김치산업육성 및 세계 김치 연구소 업무에 관한 사항
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4. 식품제조·가공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식품업체 규모화, 시설현대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농업인의 식품가공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농업생산자와 식품업체간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8. 식품 외식종합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9.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김치산업진흥법」의 운영
10. 식품명인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11. 식품소재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2. 설탕산업의 관리·육성에 관한 사항
13. 식품산업 컨설팅에 관한 사항
14.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⑨ 외식산업진흥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외식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식재료 가공산업의 육성 및 식재료 유통개선에 관한 사항

3. 한식 세계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한식업체 해외진출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한식 및 식문화의 국내외 보급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해외 우수 한식당 추천제 운영 및 해외 한식당 협의체 등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7. 한식 우수성 해외홍보에 관한 사항

8. 「외식산업 진흥법」의 운용
⑩ 수출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 시책 수립·시행

2. 농산물 및 식품의 해외홍보, 무역정보의 수집 및 해외시장 개척

3. 농산물 및 식품산업 관련 수출물류제도의 운영

4. 농산물 및 식품산업 관련 수

출경영체 육성 및 관련단체의 지원

5. 식재료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6. 농식품 수출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7. 농식품 해외 전진기지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8. 수출 농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농식품 수출 통계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0. 농식품 수출 국제협력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11. 농식품 수출신용·보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⑪ 유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물유통구조개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산지유통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운용

4. 농산물유통중사자와 생산자에 대한 유통교육 총괄

5.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농산물 및 식품 가격안정 대

책 종합·조정

7. 농산물도매시장과 공판장의
시설·운영 및 정비 등에 관
한 사항

8. 원예농산물 자조금제도의 운
영에 관한 사항

9. 농산물 생산·유통정보화 업
무에 관한 사항

10. 삭제

11. 삭제

12. 농산물 표준규격화 및 물류
표준화 지원에 관한 사항

13. 삭제

14. 산지유통조직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사항

15. 삭제

16. 삭제

17.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
정에 관한 법률」 및 「한국
농수산물유통공사법」의 운
영

18. 원예농산물 비축에 관한 사
항

19. 삭제

20. 삭제

21. 삭제

22. 삭제

23. 삭제

24. 삭제

25. 그 밖에 유통소비정책관 소
관사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⑫ 식생활소비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물 및 식품산업 관련 소
비자보호정책의 총괄

2. 농식품분야 소비자 협력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농식품종합정보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삭제

5. 삭제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운영

7. 삭제

8. 삭제

9. 「식생활교육지원법」의 운
영

10.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
른 식생활 및 식문화 보급·
전파에 관한 사항

11.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삭제

13. 식품의 영양성분 분석에 관
한 사항

14. 삭제

15. 삭제

16. 농산물우수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

17. 삭제

18.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9. 농산물 직거래 및 소매유통에 관한 사항

20. 소비지·산지 협력에 관한 사항

2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운영

22. 농산물 전자거래에 관한 사항

2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운영

24. 농산물의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

25.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에 관한 사항

26. 지리적 표시제에 관한 사항

27. 제24호에 따른 인증제도, 제25호에 따른 원산지 표시제 및 제26호에 따른 지리적 표시제의 홍보에 관한 사항

28.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

⑬ 원예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채소류(과채류를 제외한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특용작물의 생산 및 수급안정에 관한 사항

2. 채소류·특용작물의 수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채소류·특용작물의 계약재배·수매·저장 및 유통업무에 관한 사항

4. 채소류·특용작물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채소류·특용작물의 브랜드육성에 관한 사항

6.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의 운영

7. 채소류·특용작물의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8. 특작용 기자재 보급·지원

9. 인삼산업 육성 및 생산·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10.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의 추진에 관한 사항

11. 「인삼산업법」의 운영

12. 농산물의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에 관한 사항
13. 농업관측 통계정보에 관한 사항
- ⑭ 원예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채류·과수류·화훼류의 생산 및 수급안정에 관한 사항
 2. 과채류·과수류·화훼류의 수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과채류·과수류·화훼류의 계약재배·수매·저장 및 유통업무에 관한 사항
 4. 과채류·과수류·화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과채류·과수류·화훼류의 브랜드 육성에 관한 사항
 6. 과채류·과수류·화훼류의 자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채류·과수류·화훼류의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8. 시설원예산업 육성 및 현대화에 관한 사항
 9. 시설원예 에너지 대책에 관한 사항

- ⑮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물의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및 지도
 2. 농산물 안전성 조사에 관한 사항
 3. 농장, 도축장, 집유장 관련 축산물 위생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4. 농장, 도축장, 집유장 관련 축산물 위생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농장, 도축장, 집유장의 위생관리 총괄
 6. 농장, 도축장, 집유장의 검사에 관한 사항 총괄
 7. 농장, 도축장, 집유장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
- 농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생명분야 정책 기획 및 과제 관리에 관한 사항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농식품 ICT 융복합 사업에 관한 사항

6. 삭제

7. 삭제

8. 농식품분야 신기술·신사업
업무에 관한 사항

9. 농식품분야 미래이슈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산림청 업무에 관한 사항

10의2. 삭제

10의3. 삭제

10의4. 삭제

10의5. 삭제

10의6. 삭제

10의7. 삭제

10의8. 삭제

10의9. 삭제

10의10. 삭제

11. 스마트팜 혁신밸리 및 실증
단지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12. 스마트팜 청년창업 지원 및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운영
에 관한 사항

13. 스마트팜 수출 및 관련 산업
의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농업생명정책관 소
관사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과학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

1. 농립식품 과학기술정책 업무
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 농립식품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

3. 농립식품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사업평가

4. 농립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의 농립식품과
학기술 육성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농립식품 과학기술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7. 농립식품 관련 연구윤리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
항

8. 농립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의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
한 사항

9. 농촌진흥청업무에 관한 사항

10. 「농립수산식품과학기술 육
성법」의 운영

11. 농식품분야 다부처 국가연
구개발 협력에 관한 사항

12. 도시농업 육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

13.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의 운영

14. 농식품분야 지식재산 정책

의 수립 및 종합·조정과 대
외 대응

친환경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중·
장기계획의 수립·추진
 2.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의 추진
및 기술개발지원
 3. 유기농업육성계획의 수립 및
지원
 4. 자연순환농업에 관한 사항
 5.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운
영
 7.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의 운
영
 8. 친환경농산물의 유통활성화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9.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협
정에 관한 사항
 10. 유기가공식품인증제도에 관
한 사항
 1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
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
한 법률」의 운영
- 종자생명산업과장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

1. 농식품 생명산업 육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삭제

3.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4. 종자산업 육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

5. 삭제

6. 삭제

7. 종자 및 농식품 생명산업 관
련 대외협력

8. 곤충산업 육성정책 수립 및
시행

9. 국립종자원에 대한 지도·감
독

10. 기능성양잠산업 육성정책
수립 및 시행

11. 「종자산업법」, 「식물신
품중보호법」, 「농수산생명자
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곤충산업의 육
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영

12. 삭제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

1. 동물보호·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학대 방지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보호기반 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동물실험윤리 정책에 관한 사항
7. 「동물보호법」 및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농기자재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운영
2. 농업기계의 안전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화 및 농업기계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농업기계 및 농업용 석유류의 세제지원에 관한 사항
5. 「비료관리법」의 운영
6. 비료의 수급·품질관리 및 제조·수출입에 관한 사항

7. 토양 지력증진에 관한 사항
8. 「농약관리법」의 운영
9. 농약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제17조(지역본부) ① 인천공항지역본부장·영남지역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중부지역본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하고, 그 밖의 지역본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⑮ (생 략)
제29조(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4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농식품분야 신·재생 에너지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근로자 노무관리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2명(7급 1명, 9급 1명)과 그 밖의 직급별 정원 중 5명(5급 5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
제17조(지역본부) ① 인천공항지역본부장----- ----- ----- -- 하고, 영남지역본부장 및 중부지역본부장----- ----- ----- -----.
② ~ ⑮ (현행과 같음)
제29조(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6명(5급 5명, 6급 1명)-----

용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3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정보통계정책담당관, <u>외식산업진흥과장, 중자생명산업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장·식물방제과장·해외전염병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장·시험연구소장 및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전문교육과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u> 제38조(한시정원) ①·② (생 략) ③ 인수공통감염병 공동 대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2년 12월 31일까지</u> 별표 18에 따른 한시정원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두며, 별표 18의 정원 <u>2명(보건연구관 1명, 보건연구사 1명)</u>은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식품외식산업과장, 첨단기자재중자과장</u>----- -----. 제38조(한시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2023년 12월 31일</u>----- ----- <u>1명(보건연구관 1명)</u>----- -----.
---	--

신·구정원대비표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621	636	+15
일반직 계	617	632	+15
고위공무원단	12	13	+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3	12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4	18	+4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시설사무관·통계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10	117	+7

·	·	·	
행정주사·농업주사·수의주사·시설주사·통계주사·전산주사·공업주사·방재안전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환경주사·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05	111	+6
·	·	·	
·	·	·	
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수의주사보·시설주사보·통계주사보·전산주사보·공업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38	37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22	21	-1
·	·	·	
·	·	·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624	639	+15
·	·	·	
·	·	·	
일반직 계	620	635	+15
고위공무원단	12	13	+1
·	·	·	
·	·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3	12	-1
·	·	·	
·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5	19	+4
·	·	·	
·	·	·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시설사무관·통계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15	122	+7
·	·	·	
·	·	·	

행정주사·농업주사·수의주사·시설주사·통계주사·전산주사·공업주사·방재안전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환경주사·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03	109	+6
·	·	·	
·	·	·	
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수의주사보·시설주사보·통계주사보·전산주사보·공업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36	35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20	19	-1
·	·	·	
·	·	·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1,157	1,153	-4
일반직 계	1,157	1,153	-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	6	5	-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	4	+1
·	·	·	
·	·	·	
농업주사	97	98	+1
·	·	·	
·	·	·	
농업주사보	127	125	-2
·	·	·	
농업주사보 또는 농업연구사	32	33	+1
수의주사보	135	132	-3
·	·	·	
·	·	·	
행정서기	35	33	-2
·	·	·	
·	·	·	
농업서기	78	77	-1
·	·	·	

방호서기보	·	·	·	-1
수의연구관	·	·	·	+2
수의연구사	·	·	·	+2
사무운영서기보	·	·	·	-1
	·	·	·	
	·	·	·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9]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1,157	1,153	-4
일반직 계	1,157	1,153	-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	6	5	-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	4	+1
농업주사	98	99	+1
농업주사보	120	118	-2
농업주사보 또는 농업연구사	32	33	+1
수의주사보	128	125	-3
행정서기	36	34	-2
농업서기	73	72	-1

방호서기보	·	·	·	-1
수의연구관	·	·	·	+2
수의연구사	·	·	·	+2
사무운영서기보	·	·	·	-1
	·	·	·	
	·	·	·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1,491	1,491	-
일반직 계	1,491	1,491	-
·	·	·	
행정주사	30	29	-1
행정주사·농업주사 또는 통계주사	108	110	+2
농업주사	188	185	-3
·	·	·	
·	·	·	
행정주사보	46	45	-1
·	·	·	
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162	169	+7
·	·	·	
·	·	·	
농업주사보	157	154	-3
·	·	·	
·	·	·	
행정서기	54	52	-2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177	181	+4
·	·	·	
·	·	·	
농업서기	197	195	-2

농업서기보	·	·	·	-1
	·	·	·	
	·	·	·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1,491	1,491	-
일반직 계	1,491	1,491	-
·	·	·	
행정주사	30	29	-1
행정주사·농업주사 또는 통계주사	120	122	+2
농업주사	188	185	-3
·	·	·	
·	·	·	
행정주사보	46	45	-1
·	·	·	
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142	149	+7
·	·	·	
·	·	·	
농업주사보	165	162	-3
·	·	·	
·	·	·	
행정서기	54	52	-2
행정서기·농업서기	174	178	+4
·	·	·	
농업서기	196	194	-2
·	·	·	

농업서기보	.	.	.	-1
	.	.	.	
	.	.	.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4]

국립종자원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5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221	220	-1
일반직 계	221	220	-1
3급 또는 4급 이하	220	219	-1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6]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34조 관련)

1. 농림축산식품부

조직	정원	평가기간
농업생명정책관 동물복지정책과	3명 (5급 1명, 6급 2명)	2024년 9월 30일까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0명	2025년 9월 30일까지

2.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

조직	정원	평가기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관리과	4명 (4급 1명, 6급 2명, 7급 1명)	2023년 3월 31일까지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8]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38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2. 제38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	· · 2. 제38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	· · 2. 제38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	
총계	2	1	-1
일반직 계	2	1	-1
·	·	·	
보건연구사	1	<삭 제>	-1